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계 · 시정 요구

제 목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, 광산구

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북구 ○○동 ○○○○○○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(전 북구 ○○○○국 ○○과)

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○○ ○○○○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(전 광산구 ○○○○국 ○○○○과)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7. 15.부터 2015. 2. 10.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○○○과에서 ‘○○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’의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 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3. 10.부터 2015. 7. 31.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○○과에서 ‘○동 ○○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’ 보험료 사후 정산 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

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,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도록 되어 있다.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, 계약서,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542호)」 제4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·설계·발주·감리·시공·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,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기타 감리전문회사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동 지침서 “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감리업무”의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, 시방서, 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필요 시 시설물 인수기관, 유지관리 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·확인하도록 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준공당시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, 2013. 6. 19.)」 “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”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(이하 “국민건강보험료 등”이라 한다)의 납입확인서(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)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되,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

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,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과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자에 한하여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, 현장 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.

1. 광주광역시 북구 ○○과(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)

광주광역시 북구는 2012. 5. 8.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와 ‘○○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(시설연장 5.41km, 1,102백만원)’ 도급계약을 체결¹⁾하고, 2012. 5. 14. 착공하여 2014. 1. 21. 동 사업을 준공하였다.

○○과 ○○○는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, (주)○○○○○○가 ‘○○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’에 직접 시공하지 않은 상용근로자(현장대리인 등)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급대상자로 청구하였음에도, 현장 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7,515천원을 부당 지급하였다.

[표1] 북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지급액			과다지급액
	계	일용근로자	상용근로자 (현장대리인등)	
국민건강보험료	2,490,240	-	2,490,240	2,490,240
노인장기요양보험료	3,596,595	-	3,596,595	3,596,595
연금보험료	162,880	-	162,880	162,880
제경비	1,265,419	-	1,265,419	1,265,419
합 계	7,515,134	-	7,515,134	7,515,134

※ 광주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

1) 계약금액 1,102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5. 14.~2013. 5. 13.으로 계약 체결 후, 2014. 2. 7. 도급공사비 1,148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5. 14.~2014. 1. 21.으로 변경계약 체결

2. 광주광역시 광산구 ○○○○과(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)

광주광역시 광산구는 ‘○동 ○○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(시설연장 3.4 km)’을 실시하면서 2012. 12. 18. (주)○○○○○○과 토목·건축분야(1,007백만원), (주)○○○○○와 기계분야(95백만원)에 각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²⁾하고, 2012. 12. 21. 착공하여 2014. 8. 11. 준공하였다. 또한, 2012. 12. 26. (주)○○○○○○ 외 1개사와 “○○○ 외 6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”을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체결³⁾하여 2014. 7. 30. 동 용역을 준공하였다.

○○○○과 ○○○은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, (주)○○○○○○○가 ‘○○ ○○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’에 직접 시공하지 않은 상용근로자(현장대리인 등)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급대상자로 청구하였음에도, 현장 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(주)○○○○○○○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1,648천원이 부당 지급되었다.

[표2] 광산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당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지급액			부당 지급액
	계	일용근로자	상용근로자	
국민건강보험료	546,632	-	546,632	546,632
노인장기요양보험료	800,654	-	800,654	800,654
연금보험료	35,804	-	35,804	35,804
제경비	265,267	-	265,267	265,267
합 계	1,648,357	-	1,648,357	1,648,357

※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출자료 재구성

2) 토목,건축 : 계약금액 1,007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12. 21. ~ 2014. 5. 14.으로 계약 체결 후 2014. 7. 22. 도급공사비 1,195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12. 21. ~ 2014. 8. 11.으로 변경계약 체결
 기계 : 계약금액 95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12. 21. ~ 2014. 5. 14.으로 계약 체결 후 2014. 7. 22. 도급 공사비 98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12. 21. ~ 2014. 8. 11.으로 변경계약 체결
 3) 계약금액 632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5. 14. ~ 2014. 8. 20.으로 계약 체결 후 2014. 7. 18. 기술용역도 급비 645백만원, 계약기간 2012. 12. 27. ~ 2014. 7. 30.으로 변경계약 체결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, 광산구청장은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계약상대자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준공대가 7,515천원과 1,648천원을 회수 조치하고,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며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